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08

발의연월일: 2024. 11. 19.

발 의 자: 박해철 • 박용갑 • 김 윤

이용우 • 박홍배 • 전진숙

정동영 • 문금주 • 송옥주

정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 산업안전보건위 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위험성평가, 안전 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 과정에서 근로자대 표의 참여가 미진했거나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도록 변경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 반영 의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성평가 등의 절차에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및 제175조).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한다.

제17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을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 1.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 1의2.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 1의3. 제49조제2항 또는 제50조제3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	2
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u>근로자</u> 를 참여시켜야	<u>근로자대표</u>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	1.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
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	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를 참
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	여시키지 아니한 자
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	
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	
여시키지 아니한 자	
<u><신 설></u>	1의2.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
	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

<u><신 설></u>

- 2. ~ 4. (생 략)
- ④ (생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 제3항. 제18조 제1항 · 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 조제1항 · 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 · 제2항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 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 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 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 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 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 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

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1의3. 제49조제2항 또는 제50조
제3항을 위반한 자
<u> </u>
④ (현행과 같음)
⑤
1
제44조제2항
<u> </u>

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 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 항을 위반한 자 2. ~ 16. (생 략) ⑥ • ⑦ (생 략)

2. ~ 16.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